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고시

- 지식경제부 고시 2009- 137호, 2009. 7. 8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구매를 돕고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을 유발하기 위하여 단위가격의 표시의무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고시하였습니다.

- 이번 고시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는 기 제작 포장지 소진 및 신규 포장지 도안 변경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 주요내용

가.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확대

(1)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

유형	현행	개선안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종) 햄류, 우유, 설탕, 커피, 치즈, 식용유, 참기름, 마요네즈, 간장, 맛살, 식초, 복합조미료, 소금, 참치캔, 라면, 분유, 유산균발효유, 고추장, 된장, 주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종추가) 소스류, 케첩, 청국장, 밀가루, 어묵, 국수, 두부, 맛김, 과자, 견,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초콜릿류, 초코파이(상자), 잼, 베이컨, 소세지, 냉동식품(만두), 젓갈류, 액젓, 차류, 과실음료, 청량음료, 코코아, 인스턴트분말크림, 마카로니, 스파게티, 버터, 마가린, 벌꿀, 빵가루, 빵, 시리얼, 식용기름, 와인류, 생선통조림, 생수, 주류, 드레싱류, 건어물</li> </ul>
신선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종신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li> </ul>

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

(1)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제조업체가 유통과정

정확한 비교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의 용량 변경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유도함.

유형	현행	개선안
가공식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종신설)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li> </ul>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